

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25
----------	-----

제안이유

- 조문의 취지상 불부합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함.
- 제3조 제2항을 조문의 취지에 맞게 제2조로 정비 개정하고자 함.

첨 부

-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신구조문대비표 1부

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

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2조(복무선서)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. (후단 신설)</p> <p>제3조(책임완수) ① (생략)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.</p>	<p>제2조(복무선서)....., 이 경우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.</p> <p>제3조(책임완수) ①(현행과 같음) (삭 제)</p>